

의안번호	제519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323회)

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이광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8월 22일

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8월 22일
발의자 : 이광진, 김종필, 강현삼,
김영주, 김재중, 박문희,
임헌경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(안 제2조)
- 나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(안 제3조)
- 다. 연합회 임원의 선출, 임기 및 위촉 해제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라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총회 및 의결(안 제8조, 제9조)
- 마.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금지행위(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(제정)
5. 관계법규 : 붙임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7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 (13. 7. 10. ~ 7. 29.)

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합회의 업무)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2.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연합회의 구성)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·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연합회의 임원)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.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2명
3. 감사 2명
4. 사무처장 1명

②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충청북도지사

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한다.

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임원의 위촉 해제)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
3.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그 밖에 직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,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
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총회)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
3.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의결)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금지행위)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)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·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.

관계법령

[자연재해대책법]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

[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]

제27조의4(전국연합회의 업무)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전국연합회"라 한다)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"지

역자율방재단"이라 한다)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2.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제27조의5(전국연합회의 구성)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로 해당 시·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(이하 "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"라 한다)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. 이 경우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·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7조의6(전국연합회의 임원)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2명
3. 감사 2명
4. 사무총장 1명

②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27조의7(임원의 임기)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전국연합회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27조의8(임원의 직무)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,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

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7조의9(총회)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전국연합회의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
2.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

3.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

제27조의10(의결)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(開會)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의11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.